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가난한 이들의 총체적 인간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이 보다 더 복음적이고 교회적인 근거와 신원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내 본당과 교구 신자들이 이러한 사회복지시설·단체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 의식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천주교 사회복지 시설·단체’(이하 ‘시설·단체’)라 함은 교회정신에 따라 교구 관할 지역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시설·단체를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교구 사회복지회라 함은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음화국 사회복지회’(이하 ‘교구 사회복지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수원교구 관할 지역내에 있는 ‘천주교 사회복지 시설·단체’에 한한다.

제4조(운영의 기본원칙) 시설·단체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1.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에 의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교구장의 사목방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소속 본당, 교구 사회복지회와 유기적인 관계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3. 교구내 신자 및 지역주민의 욕구, 지역사회의 실정, 특히 주민의 공동요구와 특수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4. 시설·단체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회문제에 대한 치료적 차원의 사업 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사업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5. 시설·단체의 사업은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6. 시설은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시설·단체는 서비스 대상자들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소속본당 및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8. 시설·단체의 사업은 교회정신의 구현, 서비스대상자들의 생활향상과 변화의 효과, 재정투입의 효과, 사업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등이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결과가 새로운 사업수행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2장 시설·단체의 종류 및 대상

제5조(시설·단체의 종류)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모자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과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나 장애인, 자원봉사단체 등 다음 각 호의 시설·단체를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생활시설, 입양기관 등
2.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3. 모자복지시설 :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등
4. 장애인복지 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등
5. 사회·지역복지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상담기관, 지역사회교육기관, 지역사회개발시설, 지역자활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6. 그외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지귀시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관련 시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설 및 사회복지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시설 및 단체

제6조(시설·단체의 사업대상) 시설·단체의 입소·이용의 대상과 절차는 해당 시설·단체에서 정한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3장 시설·단체의 설치, 인준

제7조(시설 설치기준)

- ① 시설의 규모와 대상에 따라 관련법규의 시설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규의 시설 설치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시설도 합당한 목적에 따라 인준할 수 있다.
- ② 교구 사회복지회는 교구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입지조건) 교구 사회복지회는 제5조에 의한 시설·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
2. 공단주변지역
3. 역 주변 등 특수문제 발생지역 및 취약지역
4. 그 외 관할본당과 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9조(설치·운영 주체)

- ① 시설은 교구내에 있는 수도회와 사회복지법인, 본당사목구, 사회복지를 위한 사도직 단체와 개인 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교구 사회복지회는 시설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수도회, 사회복지법인, 사도직 단체, 개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③ 교구 사회복지회는 시·도 등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수도회, 사회복지법인, 사도직 단체, 개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는 별도의 규정¹⁾에 따른다.

제10조(시설의 설치인준)

교구 사회복지회, 수도회, 본당에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교구장으로부터 설치 승인을 득한다.

1. 교구 사회복지회 → 교구장
2. 본당 → 대리구 → 교구 사회복지회 → 교구장
3. 수도회 → 관할본당 → 대리구 → 교구 사회복지회 → 교구장
- ② 1항의 절차에 따라 설치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교구장의 인준을 득해야 한다.(개인 및 개인법인시설도 설치신고 후 인준받도록 한다.)
 1. 시설의 설치인준서류를(별지 제7-2호 : 대리구장 확인서를 제외하고) 작성하여, 대리구에 제출한다.
 2. 대리구에서는 시설 인준에 대해 대리구사제평의회 승인을 거쳐 교구 사회복지회에 대리구 공문으로(별지 제7-2호를 포함하여) 인준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사회복지회는 이를 확인하여 교구 사제평의회 심의를 거쳐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1조의 제1항에 의해 설치인준서류를 받은 교구 사회복지회는 현지를 확인하고 설치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설재산의 소유권, 지역적 필요성, 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인준추천서를 첨부하여 사제평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위·수탁 운영규정 참조

제11조(시설의 설치인준 서류)

- ① 교구내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교구 사회복지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 설치 인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인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시설의 운영규정이나 회칙(정관)
 3. 대표자 및 운영위원회 명단(별지 제6호 서식)
 4. 지도신부 승낙서(별지 제7호 서식)
 5. 본당신부 동의서(별지 제7-1호 서식)
 6. 대리구장 확인서(별지 제7-2호 서식)
 7. 재산목록(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소유증명서류 포함)
 8. 시설·단체의 경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9.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0. 중여계약서(개인이나 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별지 제8호 서식)
 11. 그외 교구 사회복지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위 1항의 2호의 시설의 운영규정이나 회칙에는 다음의 조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 제 00 조 (수원교구와의 관계) 이 시설은 천주교 수원교구의 관할내에서 교구장의 사목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며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시설 운영관리 규정 및 업무처리 요강에 명시된 대로 수행한다. 』
- ③ 시설·단체의 변경사항 (시설·단체의 폐지, 소재지, 명칭 및 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교구 사회복지회에 1개월 이내에 보고(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하도록 한다.

제12조(정비의 권고) 교구 사회복지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이 그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른 유사한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그 장소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행정기관의 허가)

- ① 시설·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때 그 사업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다른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아 수행할 수 있다.
- ② 교구 사회복지회는 시설·단체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장 조직 및 종사자

제14조(조직 및 지도신부)

- ① 시설·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종사자에 대한 조정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내부규정을 두어야 한다.
- ②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에 따른 운영을 위해 지도신부를 둔다. 지도신부는 소속본당의 신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당신부가 사정상 지도신부의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에서 지도신부를 추천하고 교구 사회복지회와 협의하여 교구장이 임명한다.
- ③ 시설·단체의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사업운영을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5조(시설·단체의 직원)

- ① 시설·단체의 운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와 사업내용에 맞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직원에 관한 고용, 인사, 노무 등 제반 관리에 대한 내용은 교구규정에 준용한 시설·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 ② 시설·단체의 직원에 관한 제반 채용관련 서류와 복무규정 등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별도로 비치, 보관해야 한다.

제5장 시설·단체 운영

제16조(사업계획의 수립)

- ① 시설·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지역조사 등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소속본당, 유관행정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한다.
- ② 사업계획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하되, 각 사업의 내용은 상호연계성과 종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대상자별로 기능을 안배하도록 하고, 항상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17조(운영·자문위원회)

- ① 제16조에 의거하여 시설, 단체의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하여 구성한 해당시설의 운영위원회와 동일하다.
- ③ 위원회는 1/2 이상의 가톨릭 신자로 구성하며, 지도신부를 포함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사항을 다루며, 이를 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 및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교회적 가르침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18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활용)

- 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본당신자 및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교육 후 활용토록 한다.
- ②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업에 대한 예비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책임을 고양토록 하며 항상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수납)

- ① 시설의 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 부터 수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은 사회복지 관련법규에 따라 시설에서 정한다.
- ③ 시설장은 수납된 비용을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장부 및 서류등의 비치) 시설·단체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단체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
3. 단위사업별 기본계획서
4. 시설생활자·이용자 명부(단체는 회원명부)
5. 일일사업 운영(업무)일지
6. 생활자·이용자 비용수납 조서
7. 시설·단체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
8. 회계장부(후원금 관리대장 포함)
9.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10. 정관 및 제규정과 관계 결의 서류
11.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21조(재무회계 처리) 시설의 재무회계의 처리는 제5조에 의거한 시설의 종류에 따른 관련법규²⁾에 따른다.

2) 시설의 회계관리지침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별지 제8호~제13호 서식 참조요망.

제22조(시설 관리운영) 시설장은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 그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운영·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정·시행하고 교구 사회복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실적 및 평가)

- ① 시설·단체의 사업실적 결산은 매회계년도 말에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② 시설·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1. 교회정신과 시설의 설립목적에 대한 기대효과
 2. 대상자와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효과
 3. 소속 본당신자들과 지역주민의 성장과 변화의 효과
 4. 자원동원 및 활용에 대한 효과
 5. 적용된 사업방법론의 적합성 여부
 6. 인력관리 및 재정투입의 합리성 등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장 경비의 부담

제24조(운영 및 경비지원) 시설·단체의 운영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며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운영경비를 별도의 지침에 따라 교구 사회복지회 후원금의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25 조(특별지원) 교구 사회복지회는 불의의 사고나 긴급 보수를 요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

- ① 교구 사회복지회와 지도신부는 시설·단체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방문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교구 사회복지회는 지도·감독을 교구장의 사목방침 및 사회복지관계 법령, 사회복지

지법인 지도감독 요강 등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시설·단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시설·단체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지도·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며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 ④ 교구 사회복지회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제27조(인준 취소)

- ① 시설·단체의 사업이 교구장의 사목방침이나 제4조의 운영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본당신부의 의견서와 대리구장신부의 확인을 거쳐 사회복지회에서 이를 최종 정리하여, 교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설·단체의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인준받지 않은 단체는 “가톨릭, 천주교 또는 천주교 수원교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후원회 활동 등을 할 수 없다.

제28조(지역별 설치·운영계획 수립) 교구 사회복지회는 교구 관할내 저소득 밀집지역·요보호대상자 및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 우선대상 지역들이 포함된 중장기 육성계획에 의거하여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현황 보고) 시설의 현황은 별지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교구 사회복지회와 본당신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간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시설내 직원 변동에 관한사항
- 4. 기타 사회복지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8장 분야별 협의회

제31조(협의회의 조직)

- ① 시설·단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식·기술·정보교류와 시범사업개발을 위하여 제5조에 의거 분야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분야별 협의회를 설립하는 경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시설 상호간의 지식·경험 및 정보교환
 - 2. 시설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세미나 개최
 - 3. 시설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5. 시설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계몽 및 출판홍보
 6. 기타 교구와 시설간의 유기적인 결합에 필요한 사항
- ③ 그 외 분야별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 공포전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시설, 단체는 규정 공포후 3개월 이내 제11조의 자료를 제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구 사회복지회의 기타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이 규정은 교구장의 승인(1998. 7. 14.)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천주교 사회복지시설 인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지도신부성명		시설명			
	주 소	(전화)				
시설개요	명 칭		사업의종류			
	소 재 지	(전화)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 연월일		입 소 정 원	명		
종사자수 (유급)	남	명	예산규모	수 입 총 액	지 출 총 액	원 원
	여	명				
	성직자	명				
	수도자	명				
	평신도	명				
	계	명				
본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정신과 교회법 및 교구 사회복지시설·단체 운영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교회의 복음선교 사명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구 사회복지시설·단체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오니 인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설 장 (인) 지도신부 (인) 천주교 수원교구장 귀하						
구비서류 1. 시설운영규정 1부(법인은 정관을 첨부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4. 시설설치에 관한 회의록(법인에 한한다) 또는 시설설치경과보고서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6. 대표자 및 자문위원 (또는 운영위원) 명단 7. 지도신부 승낙서·본당신부 동의서 8. 중여계약서(개인이나 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						

입소 대상 서류 · 이용 절차	
후 원 구 좌	
시 설 평 면 도	
시설약도 및 교통편	

천주교 사회복지시설 경과보고서

시설명 :

분야 :

정 신 · 이 념		
설 립 자 설립주체		
목 표	I. II. III. IV. V.	
시 설 연 혁		
주 요 사 업		
비고		

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명 :		
년도 사업목표		
주요 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	2.
	(주요 내용)	
	3.	4.
	※ 프로그램의 유형이 더 많은 경우는 별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세 입			세 출		
	항 목	금액(원)	해 소	항 목	금액(원)	해 소
년도 예산서	재산수입			인건비		
	-기본재산			-기본급		
	-수익사업			-수당		
	사업수입 (후원)			-상여금		
				-잡급		
	보 조 금 수 입			관공비		
	-정부보조			운영비		
	-교구보조			-기관운영비		
	-법인보조			-시설운영비		
	-기타					
	차입금			시설보강비		
				일반사업비		
	전입금			-○○사업		
	이월금			-○○사업		
	잡수입			-○○사업		
				수익사업비		
				전출금		
				과년도 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계			계		
협 조 사 항 (참조)						

년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시설명 :

지역소개	행정관할구역		인구	약	만명
	시설압소(이용) 대상자				
	시설대상자의 기대나 요구				
년도 사업목표					
주요 프로그램 실적 이용(수용) 인원 ※연인원으로 기재 요망	1. 프로그램명 :		2.		
	(주요 내용)				
	이용 인원		이용 인원		
	3.		4.		
			※ 프로그램의 유형이 더 많은 경우는 별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용 인원		이용 인원		

	세 입			세 출		
	항 목	금액(원)	해 소	항 목	금액(원)	해 소
	재산수입 -기본재산 -수익사업 사업수입 (후원) 보조금수입 -정부보조 -교구보조 -법인보조 -기타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인건비 -기본급 -수당 -상여금 -잡급 관공비 운영비 -기관운영비 -시설운영비 시설보강비 일반사업비 -○○사업 -○○사업 -○○사업 수익사업비 전출금 과년도 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계			계		
협 조 사 항 (참조)						

200 - 000

천주교 사회복지시설 인준증

시 설 명 :

소 재 지 :

분 야 :

인 준 일 :

상기 시설을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
시설 · 단체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교구 사회복지시설로 인준합니다.

200 년 월 일

천주교 수원교구장 최 덕 기 주교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시설명 :

구분	직 위	성 명(세례명)	주 소(연락처)	직 업	비 고
1	지도신부				
2	시 설 장				
3	운영위원				
4					
5					
6					
7					
8					
9	감 사				
10					

시 설 장 _____인

지도신부 _____인

천주교 수원교구장 귀하

승 낙 서

시 설 명

주 소

시 설 장

본인은 상기 시설과 시설종사자들에게 지도신부로서 소임을 다하고 영성적·물질적 지원을 통해 교회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시 설 명

지도신부

인

※ 지도신부 승낙서와 동의서는 다른 인준서류를 완비하여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동 의 서

시 설 명
주 소
시 설 장

상기 시설은 본인의 사목구에서 교회정신에 따라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천 주 교 수 원 교 구
성 당

주임신부 인

확 인 서

시 설 명

주 소

시 설 장

상기 시설은 본 대리구의 00본당 관할에서 교회정신
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천 주 교 수 원 교 구

0 0 대 리 구

대리구장

신부 (인)

※ 대리구장 확인서는 인준서류가 완비된 후 최종 확인을 받으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